

---

#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질의회신

---

2022. 7.

구분	질의	회신
공통	직영과 도급사업장이 함께 존재하는 1개 사업장 안에서, 직영 1개소(도급인), 도급사업장 1개소(수급인) 총 2개소(2회)로 현장작동성평가를 수행하는지 여부	현장작동성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같은 사업장 내 직영과 도급사업장이 있을 경우, 별도로 분리하여 평가하지 않음. 1개소(1회)로 현장작동성평가를 실시함.
	본사 종합평가 시 C지표(직영 및 도급/건설발주)에 대한 현장방문 포함 유무	`22년도 현장작동성평가는 2개소 이상을 평가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증대하고 현장실행을 촉진하고자 확대하였음. 직영 및 도급사업장 수가 적은 기관의 경우 종합평가 시 본사 시설에 대한 현장작동성평가 해당 지표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임.
	본사에 대한 현장작동성평가와 종합평가의 차이	항공, 항만, 위락시설 등 관리범위가 넓은 기관의 경우, 특정 대상 지역에 한해 현장작동성평가 실시 후 종합평가지 그 외 본사 시설에 대해 평가할 예정임.
	평가대상 장소 일정 통보	수준평가는 사전 준비를 위한 안내는 평가 전월에, 평가 대상 장소 알림은 해당월 근무일 기준 2일 전에 알려드립니다. 평가 안내기간 단축은 상시적인 안전활동이 현장에서의 시행여부확인, 선택적 안전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임. 참고로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도는 방문 전일에 통보하고 있음.
	현장작동성평가 2개소 지정 기관의 평가일자	평가월과 날짜를 다르게 지정하여 현장별 2일로, 총 4일동안 평가를 진행함.
	평가 유형별로 동일한 평가위원 구성	유형별로 동일한 평가반(평가위원)을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수준평가는 평가 시작 전 평가반(평가위원) 집체교육을 실시하여 기관별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구분	질의	회신
A	<p>연계 평가항목 지표의 항목 당 가중치 반영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산업형) A-1.1 지표 결과 산출 시 A-2, B-7, B-8, D-3 지표와 연계하여 결과를 반영</li> <li>- (서비스집중형) 연계 적용 유무.</li> </ul>	<p>해당 연계평가 항목에서 최고경영자의 활동이나 지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최고경영자가 면담 시 모든 활동과 지원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답변하는 불일치성을 개선하고자 결정한 사항으로 각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함.</p> <p>참고로 연계평가 항목은 기간산업형과 서비스집중형 모두 적용하며,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사항임.</p>
B	<p>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유해요인(화학·물리·생물학적) 조사파악 및 범주설정관련 참고할 자료</p>	<p>별도로 기송부해 드린 「공공기관 안전보건 수준향상 가이드」 등을 참조하기 바람.</p>
	<p>평가항목 지표 관련 보건관리자의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 예산 부족, 관련 지침 등</li> </ul>	<p>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33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97호)를 참조하시기 바람이며, 동 지침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보건관리자가 단독적으로 행하는 업무가 아님.</p> <p>수준평가에서는 기관의 지원(사업주의 추진 의지와 지원)과 근로자의 활동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단순히 보건관리자의 역할만을 평가하지는 않음.</p>
	<p>별도 사무실에서 순수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수급업체에 위생시설 설치 범위와 기준</p>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 6 (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근로자 휴게 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H-178-2015), 사업장 세면·목욕 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등을 참조하기 바람.</p>

구분	질의	회신
B	도급사업의 유형	도급사업에 대한 별도의 유형은 없음. 기관이 지배·관리하는 모든 도급사업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포된 가이드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참고(검색)하시기 바람
	도급사업관련 수급업체가 많은 경우, 도급사업 평가자료 준비 정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평가지표는 도급사업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안전관리대상 도급이 누락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도급과 연관된 부서(공사, 계약, 안전 부서 등)간 상호협조체계 및 운용상태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소수의 도급사업 자료만으로는 적절한 평가가 어려움. 편람의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하시되, 평가위원이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그에 따라 주시기 바람.
	조달청 계약의 적격수급업체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을 통한 업체선정 계약 건은 그 업체의 적격성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계약요건을 반영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지표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동 지표는 그 외 도급 계약에 대한 수급업체 선정절차 마련이나 이행여부가 평가됨을 참고바람.
	현장작동성평가 대상 작업장에 도급사업이 없는 경우 도급사업 관련 평가방법	현장작동성평가 대상 사업장에서 도급사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된 평가 지표 항목은 결측처리하며, 종합평가 시 도급사업이 확인될 경우 별도 평가함.

구분	질의	회신
C	본사의 종합평가 시 평가범위	본사 청사의 경우 기관이 지배·운영·관리하는 전체 공간이 평가 대상임
	현장작동성 대상 사업장이 임차청사이고 사무직으로 구성된 경우, 평가방법	<p>C-1 안전보건활동 항목은 기본적으로 현장 순회가 수반되는 평가이나, 관련 지침이나 절차의 현장에서의 보유 여부 등도 평가함을 참고바람</p> <p>또한, 직영 및 도급 사업장 현장작동평가에서 확인할 수 없는 평가지표의 경우 종합평가 시 별도로 확인할 예정임.</p> <p>건물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와 운영을 기관이 아닌 다른 별도의 사업자(건물주)가 실시할 경우, 해당 평가지표 항목은 결측 처리됨. 다만, 임차 건물 내 기관 소유의 기계 전기 설비 및 건물축 등이 있을 경우는 평가를 실시함.</p>
	현장작동성평가 2개소 대상기관의 경우, C-1 평가항목의 종합평가 제외 유무	현장작동성평가에서 C-1 평가지표가 모두 평가되면 종합평가에서 C-1을 확인하지 않음. 다만, 현장작동성평가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종합평가에서 C-1 평가지표 일부 내용을 평가할 수 있음.
	일반사무직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할 개인보호구 및 재난대피용 보호구 대장관리 필요성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 정한 작업에는 반드시 지급하고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됨. 다만, 기관의 고유 업무특성이나 비상상황을 대비해 지급한 보호구는 관리대장 작성 등을 통해 지급여부, 사용연한 등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음.

구분	질의	회신
C	<p>직원이 상주하지는 않으나 수시로 출입하는 장소도 밀폐공간인지 여부</p>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 따른 공간은 반드시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되, 근로자가 상주하지는 않으나 보안 등의 이유로 출입제한 장소는 소화약제 분출 등의 위험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p> <p>참고로 법에 따른 분류기준 이외의 장소(개방된 장소 포함)에서도 질식사고발생 사례가 있음.</p>
	<p>폭발위험장소 검토, 취급설비 관리기준 등</p>	<p>「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따르면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규격으로는 「KS C IEC 60079-10-1(폭발위험장소의 구분)」, 「KS C IEC 60079-10-2(가연성 분진분위기)」가 있음.</p> <p>기관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 상기의 규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함.</p> <p>자체검토가 어려울 경우, 방폭관련 전문가, 외부 컨설팅기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기관 자체적으로 알아볼 사항임.</p>

구분	질의	회신
C	기관 내 별도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선정기준과 평가 기준	<p>건설재해예방전문기술지도기관의 능력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관은 역량을 갖춘 기술지도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p> <p>또한, 발주자는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그 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임.</p> <p>다만, 기관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 및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임.</p>
D	안전활동 수준평가와 안전관리등급제의 사고사망 산입기준(발생일, 승인일)	<p>수준평가의 사고사망자 수를 승인일 기준으로 산입할 경우, 당해연도 사고사망 예방 및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수준평가는 도입 취지 등에 따라 사고사망자 수를 '발생일' 기준으로 산입하고 있음.</p> <p>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도의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는 안전관리등급평가단이 평가하는 별도 지표임.</p>